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 (02-2100-2690)	담 당 자	허남혁 주무관 (02-2100-2695)
	금감원 회계조사국장 정 규 성 (02-3145-7290)		권영준 팀장 (02-3145-7320)
	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 김 정 흠 (02-3145-7860)		문정호 팀장 (02-3145-7301)
			황인협 팀장 (02-3145-7862)

제 목 :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·감리결과 조치

- 증권선물위원회는 1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,
 -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·공시한 (주)한일진공 등 3개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, 감사인지정,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,
 -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(금융위 결정), 감사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.

(붙임) 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(붙임)

조사·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

(제2차 증권선물위원회, 2020.1.22. 의결)

(단위 : 백만원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㈜트레이스</p> <p>결산기 : 2016.12.31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(’16년 10,160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와 공모하여 불량 재고를 신제품으로 위장한 후,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고가로 수출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매출을 계상한 사실이 있음</p> <p>②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기재위반</p> <p>- 회사는 ’17.6.8. 및 ’17.11.2. 제출한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16년 재무제표를 사용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실효성이 없어 조치를 부과하지 않음</p>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트레이스</p>	<p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’16년 9,400백만원)</p> <p>- 감사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, 회사가 불량재고를 선적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 하였음에도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,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</p>	<p>대현회계법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징금 132백만원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% - (주)트레이스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3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무정지건의 2년 - (주)트레이스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5년 - 주권상장·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20시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주)트레이스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 상장 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8시간 <p>공인회계사 1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주)트레이스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 상장 제외)·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6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)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(주)한일진공</p> <p>결산기 : 2016.12.31. 2017.03.31. 2017.06.30. 2017.09.30. 2017.12.31. 2018.03.31. 2018.06.30.</p> <p>코스닥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파생상품자산 과소계상 등 (연결 '16년~'17년3분기 27,705백만원~51,864백만원 별도 '16년~'17년3분기 30,841백만원~54,770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투자목적으로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,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야 함에도,</p> <p>- 전체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파생상품평가이익(당기손익)과 매도가능 금융자산평가이익(기타포괄손익)을 인식하지 않아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함</p> <p>②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 (연결 '16년~'18년반기 1,689백만원~7,641백만원 별도 '16년~'18년반기 921백만원~7,473백만원)</p> <p>- 회사는 대표이사 및 임직원 겸직 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던 ○○○○○○○에 대한 투자지분을 관계기업투자로 회계처리했어야 함에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련 평가손익을 부당계상함</p> <p>③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</p> <p>- 회사는 증권신고서('17.12.13.)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7기('16년), 제8기('17년)반기 및 제8기('17년)3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함</p> <p>④ 소액공모 공시서류 기재 위반</p> <p>- 회사는 소액공모 공시서류('17.11.24.)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제7기('16년) 및 제8기('17년)3분기 재무제표를 사용함</p>	<p>회 사 :</p> <p>- 과징금 (前대표이사 : 12백만원)</p> <p>※ 회사의 과징금 부과액은 「자본시장법」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</p> <p>- 과태료 36백만원</p> <p>- 감사인지정 2년</p>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(주)한일진공	<p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파생상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’16년 연결 27,705백만원, 별도 30,841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 <p>②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연결 ’16년 7,473백만원, ’17년 7,641백만원 별도 ’16년 7,473백만원, ’17년 7,473백만원)</p> <p>- 감사인은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이 관계기업투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형식적 지분율 요건만 고려하고 다른 유의적인 영향력 요건(대표이사 겸직 등)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</p>	<p>이촌회계법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징금 90백만원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% - (주)한일진공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<p>공인회계사 : 1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주)한일진공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2년 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 제외),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- 직무연수 8시간 <p>공인회계사 : 1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주)한일진공에 대한 감사 업무제한 1년 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 제외),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- 직무연수 6시간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<p>한국전력기술(주)</p> <p>결산기 : 2015.12.31. 2016.12.31. 2017.12.31.</p> <p>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</p> <p>업종 :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</p>	<p>【회사】</p> <p>① 미수금 과대계상 등 (’15년 21,155백만원, ’16년 △21,155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주처가 부과한 지체상금에 대하여 하도급사가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고, 관련 중재가 진행되는 등 하도급사의 변제가 ‘거의 확실(Virtually certain)’하지 않음에도 - 회사는 지체상금 부담으로 인한 공사손실을 최소화하고 변제예상금액 21,155백만원을 미수금으로 인식함에 따라 ’15년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고, - ’16년에는 전기오류를 수정하지 않고, 중재 판정에 따라 당기에 손해배상비 등으로 처리(관련 미수금 제거)하여 당기순이익을 21,155백만원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<p>② 매출원가 과소 및 과대계상 (’16년 14,818백만원, ’17년 △14,818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는 설계용역이 달성되는 정도를 진행률로 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함에 있어서 발생 원가가 예정원가를 초과하는 등 예정원가 오류 사업들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- ’16년에 매출원가를 14,818백만원 과소계상하였고 ’17년에는 전기오류를 당기에 반영하여 매출원가를 14,818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	<p>회 사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징금 286.1백만원 - 감사인지정 2년 - 시정요구

회사명 등	지 적 사 항	조 치
한국전력기술(주)	<p>【감사인 및 공인회계사】</p> <p>① 미수금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’15년 21,155백만원, ’16년 △21,155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주처가 부과한 지체상금에 대해 하도급사가 계약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관련 중재가 진행중인 점을 간과하는 등 변제가능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- 회사가 ’15년에 지체상금 관련 공사손실을 취소하고 변제 예상금액 21,155백만원을 미수금으로 인식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고 - ’16년에는 전기에 인식했어야 할 비용을 중재판정으로 당기에 손해배상비 등으로 인식함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21,155백만원 과소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<p>②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(’16년 14,818백만원, ’17년 △14,818백만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발생원가가 예정원가를 초과하는 등 예정원가 오류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- 회사가 ’16년 매출원가를 14,818백만원 과소계상하고 ’17년에는 전기 오류를 당기에 반영하여 매출원가를 14,818백만원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	<p>삼정회계법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% - 한국전력기술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<p>공인회계사 3인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전력기술(주)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- 주권상장(코스닥·코넥스 상장 제외)·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- 직무연수 6시간

(감리집행기관 :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)